

증권투자신탁 약관변경

1. 투자신탁 명칭 : 대신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-모
2. 약관변경 사유 : 투자대상에 공모주 추가
3. 약관변경내용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	변경사유
제1조 (목적등)	<p>② 당해 투자신탁은 “지구온난화의 완화·적응·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”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외국주식<추가> 등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해외금융시장의 금리·주가·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,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.</p>	<p>② 당해 투자신탁은 “지구온난화의 완화·적응·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”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외국주식(외국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) 등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해외금융시장의 금리·주가·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, 수익자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.</p>	
제36조 (투자대상 등)	<p>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,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, 지구온난화 완화섹터(하부산업 :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,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,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,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)·지구온난화 적응섹터(하부산업 : 물기반시설산업, 해안기반시설산업,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 산업, 건축기반시설산업)·지구온난화 대응섹터(하부산업 : 재난구조산업, 재난복구산업)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<추가>(이하 “외국주식”이라 한다)</p>	<p>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, 주권,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, 지구온난화 완화섹터(하부산업 :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,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,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,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)·지구온난화 적응섹터(하부산업 : 물기반시설산업, 해안기반시설산업,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 산업, 건축기반시설산업)·지구온난화 대응섹터(하부산업 : 재난구조산업, 재난복구산업)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(외국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)(이하 “외국주식”이라 한다)</p>	

부 칙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8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	
-----	---	--	--